

제22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주민자치  
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3 월 15 일

여 수 시 장



여수시 조례 제1845호

붙임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
1부

##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담당하거나, 보조 또는 강사”를 “담당하거나, 강사의 보조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 강사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를 강사로 활용 할 수 있다.

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자원봉사자) ① (생 략)</p> <p>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<u>담당하거나, 보조 또는 강사</u>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자원봉사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담당하거나, 강사의 보조</u> -----.</p>
<p>제9조(강사)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. &lt;<u>단서 신설</u>&gt;</p> <p>② <u>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 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</u>를 활용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(강사) ① ----- ----- ----- . 다만, 해 <u>당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 강사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를 강사로 활용 할 수 있다.</u></p> <p>&lt;<u>삭 제</u>&gt;</p>